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8 선고 2020나32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330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49,088,8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이 2019. 5. 1. 마쳐진 것을 이유로 청구취지에서 2019. 5. 1.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매매계약을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서로 친형제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18. 11. 25. 원고에게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② 생략)와 (차량번호 ① 생략) 로더 2대(이하 ‘이 사건 로더 2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로더 2대의 남은 할부대금을 2019.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할부잔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차후 할부금 미납 또는 지연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로더 2대의 할부대금에 관한 채무 인수절차를 따로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로더 2대를 인도받았으나, 2019. 4.경 이후 할부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차량번호 ② 생략) 로더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D 주식회사가 2019. 5. 20. 43,950,000원에 이를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였고(잔존 채무액 23,831,080원), (차량번호 ① 생략) 로더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E 주식회사가 2019. 6. 25. 무렵 22,600,000원에 이를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였다(잔존 채무액 25,257,784원).

라. 한편, 피고 C은 2018. 11. 1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설기계를 I에게서 매수하고 2018. 11.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8. 11. 23. H에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9. 4. 16. 피고 C에게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매대금 143,290,000원(대출금 143,29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에 매수하였다(이하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 B은 2019. 4. 29. E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H에 그때까지의 대출금 합계 143,475,491원을 변제하였고, 2019. 5. 1.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며, H의 근저당권은 2019. 5. 22.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로더 2대를 매수하면서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로더 2대의 할부대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잔존 할부대금 채무액 합계 49,088,864원(= 23,831,080원 + 25,257,7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날 이후로써 원

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본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로더 2대를 삼척시 F에서 석산 개발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로더 2대는 10년이 넘은 노후장비로서 원고가 ‘엔진헤드 가스켓 교환, 트랜스미션 수리, 유압호스 교체 등’의 전반적인 수리를 해 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임대조건과 수리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로더 2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이 사건 로더 2대가 할부대금 채권자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로더 2대를 매도하기 전에 이미 G에서 장비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요구받았는데도, 피고 C을 기망하여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로더 2대를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 C이 원고에게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로더 2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로더 2대를 G에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로더 2대에 대해 수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로더 2대에 관한

매매계약 제3조에서 “피고 C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4. 16. 체결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로더 2대에 대한 할부대금을 2019. 4.경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 C이 할부대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로더 2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C이 2019. 4.경부터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가 2019. 5. 및 6.경 이 사건 로더 2대를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014다22581(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의 무자력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C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가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C은 무자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자력인 피고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 B은, 피고 C이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H의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가액은 7,50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였던 점, ② 피고 C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한 것이 사업의 계속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하면서 피고 C의 H에 대한 채무를 매수인인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C이 채권자 중의 1인인 H에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방법이 변제와 같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피고 B은 건설중장비를 판매하는 J에게 로더 1대를 구입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J이 K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을 뿐, 평소 피고 C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피고 C의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피고 C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C이 서로 친형제 사이이고, 서로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재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H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인 사실, 피고 C이 H에 부담하는 채무액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근저당권상 채권가액인 7,500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에서 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49,088,864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 중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4,500만 원(= 1억 2,000만 원 - 7,500만 원)보다 큰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판사 이재민, 판사 고병용

별지

목록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1-03-0125-00-00
건설기계명	로더
차대번호	
형식	DL450-3
등록일자	2015-01-12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	강원도 삼척시